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7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강준현 • 박홍배 • 조인철

이성윤 · 정태호 · 민병덕

김현정 · 김교흥 · 전재수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

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아 행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생 략) 농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 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 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 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 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 단지의 토지 중 제14조제2항 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u>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u>
<u>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u>
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u>등으로 본다.</u>
3. ~ 6. (현행과 같음)

3. ~ 6. (생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